

○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39호(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 
제정(안) 행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673호(2024. 01. 23.)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21호(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2월 06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| 관보내용   | 정정사항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주요내용<br>○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년 추가 | 2. 주요내용<br>○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 |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 |